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사이냅소프트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시 홈페이지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2022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2,928,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이냅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사이냅소프트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시 홈페이지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2022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2,928,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7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이냅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티맥스소프트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외부망 web/was	WebtoB Standard 4.1	1	12개월
2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WebtoB Standard 4.1, Jeus Enterprise 7.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7,83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티맥스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티맥스소프트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외부망 web/was	WebtoB Standard 4.1	1	12개월
2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WebtoB Standard 4.1, Jeus Enterprise 7.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7,83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티맥스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윈스테크넷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IPS	SNIPER ONE-i 53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4,241,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윈스테크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윈스테크넷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IPS	SNIPER ONE-i 53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4,241,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윈스테크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윈스테크넷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서버팜) 방화벽	SNIPER NGFW V2.0 5100	1	12개월
2	외부망IPS	TW/SNIPER ONE-I 2000	1	12개월
3	DDos 대응시스템	SNIPER ONE-d 43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9,593,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윈스테크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윈스테크넷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서버팜) 방화벽	SNIPER NGFW V2.0 5100	1	12개월
2	외부망IPS	TW/SNIPER ONE-I 2000	1	12개월
3	DDos 대응시스템	SNIPER ONE-d 43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9,593,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윈스테크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시큐아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 방화벽	BLUEMAX NGF 2000	1	12개월
2	내부망(용역망) 방화벽	BLUEMAX NGF 300	1	12개월
3	외부망 방화벽	BLUEMAX NGF 15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368,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시큐아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부망 방화벽	BLUEMAX NGF 2000	1	12개월
2	내부망(용역망) 방화벽	BLUEMAX NGF 300	1	12개월
3	외부망 방화벽	BLUEMAX NGF 150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368,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시큐레이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통합보안관제시스템	eyeCloudSIM v3.1	2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9,369,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레이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시큐레이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통합보안관제시스템	eyeCloudSIM v3.1	2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9,369,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레이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피앤피시큐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및 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DBSAFER Enterprise V5.0	8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7,853,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피앤피시큐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피앤피시큐어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및 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DBSAFER Enterprise V5.0	8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7,853,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피앤피시큐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휴네시온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외부망 연계 망간자료전송시스템	i-oneNet V5.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336,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휴네시온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내외부망 연계 망간자료전송시스템	i-oneNet V5.0	1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336,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이지서티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UBI SAFER-PSM MANAGER V3.0 / AGENT V3.0	13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0,752,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지서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이지서티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UBI SAFER-PSM MANAGER V3.0 / AGENT V3.0	13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0,752,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illegible]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지서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유비앤티스랩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새올 업무지원프로그램	조직도(업무분장), 직원경조사	1	12개월
2	새올 통합로그인 SSO 모듈	홈페이지, 성과관리 등 모듈	7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11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유비앤티스랩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의정부시청
○ 제조사·공급사: ㈜유비앤티스랩
○ 협 약 대 상

연번	적용 부분	품명	수량(식)	비고
1	새올 업무지원프로그램	조직도(업무분장), 직원경조사	1	12개월
2	새올 통합로그인 SSO 모듈	홈페이지, 성과관리 등 모듈	7	12개월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11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의정부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유비앤티스랩　　(인)